

— 구미시청소년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05년 10월 11일

나. 제안자 : 구 미 시 장

다. 회부일자 : 2005년 10월 11일

라. 상정일자 : 2005년 10월 18일

제10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 질의, 토론,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김 경 배

나. 제안이유

- 청소년상담센터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마련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효율적인 청소년 상담서비스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함.

다. 주요내용

- 청소년 상담센터 운영에 관한 세부기준 제시
 - 목적, 설치기준, 운영, 기능, 구성, 자격과 임용, 신분보장과 정년, 직원의 면직, 상담센터장의 직무, 협의회의 기능 및 운영, 상담자원봉사자, 수익자 부담 등
- 운영에 관한 시 직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

라. 참고사항

○ 청소년기본법 제46조

3. 검토보고의 요지 - 전문위원 이 수 영

- 본 제정조례안은 청소년의 정신건강, 학습, 진로문제 등에 관한 고충을 상담처리하고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청소년상담실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과 상담센터 직원의 임용기준 등을 마련하여 상담실 운영의 내실을 도모코자 청소년 상담센터의 관련운영 조례를 제정하는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